

KOSBI 중소기업 포커스

포스트코로나 대비 규제혁신: 21대 국회의 역할

책임작성 | 장윤섭 책임연구원, 권선윤 책임연구원
최수정 연구위원(02-707-9876, sjchoi@kosbi.re.kr)

※ KOSBI 중소기업 포커스는 중소기업연구원 홈페이지(www.kosbi.re.kr)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
| 목 차

1.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당면과제: 규제혁신
2. 20대 국회의 규제혁신 성과와 한계
3. 21대 국회 최우선 규제혁신 추진 과제
4. 결론

| 요약

-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21대 국회의 최우선 정책과제는 규제혁신
 - 우리경제는 비대면 산업 등 신산업 활성화(성장 잠재력 확충)와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조기 정상화(위기극복)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
 - 비대면 분야 벤처·스타트업 육성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비대면 산업의 혁신 걸림돌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
 - 한편, 제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등 유동성 지원과 병행하여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비용유발 규제 완화 필요
- 20대 국회('17~'20년)는 신기술·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다수의 법률을 가결하며 지난 4년간 의미 있는 규제혁신 노력을 전개
 - 그 결과 신산업·신기술 도입에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, 데이터 3법,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(이하 P2P법) 등이 도입되고,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등이 이뤄짐
- 신산업·신기술 분야의 규제혁신이 활발히 이뤄진 반면, 일부 핵심규제 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되어 폐기됨
 - 신산업과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, 정부 입법예고 법률 가운데 국회의 문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된 법률은 전체의 29.6%를 차지

-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규제혁신 입법과제의 신속한 추진 필요
 - 데이터,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산업 구축을 위한 법안 마련 재추진 필요
 - 포스트코로나 대비 중소기업의 비대면 생산·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법제화 재추진 시급
 -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비대면 진료, 원격 교육, 비대면 배송·플랫폼 등 비대면 산업의 진입·서비스 규제혁신 노력 필요

- 제조업 등 주력산업 피해회복·정상화를 위해 다음 규제혁신 입법과제의 신속한 추진 필요
 - ‘일괄담보제’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동산·채권 담보법의 신속한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·자영업자에 원활한 자금조달 환경 조성
 - 중소기업의 기초체력 회복을 위해 경영부담을 야기하는 과도한 환경·노동 규제의 획기적 혁파 추진
 - 리쇼어링(reshoring) 활성화를 위해 국내 공장 신·증설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공장 입지규제 개선 논의

- 21대 국회의 최우선 규제혁신 과제의 조속한 재입법 및 처리를 위해 국회 차원의 규제혁신기구 구성 필요
 - 17대, 18대 국회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‘규제개혁특별위원회’를 운영하였으며, 영국은 의회 차원의 규제개혁위원회(Regulatory Reform Committee)를 운영

- 또한, 포스트코로나 대비 국회의 규제혁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회 통과된 입법의 신속한 하위법령 마련 필요
 - 데이터 3법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행정입법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함
 - 정부의 행정입법 마련시 상위법의 규제혁신 취지를 왜곡시켜 기업을 옥죄는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할 필요

1.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당면과제: 규제혁신

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21대 국회의 최우선 정책과제는 규제혁신

- 우리경제는 비대면 산업 등 신산업 활성화(성장 잠재력 확충)와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조기 정상화(위기극복)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

-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(경제전문가 222명, 중복응답): 규제혁신(73.4%), 노동시장 개혁(57.2%), 사회안전망 확충(33.9%) (경총, 2020)

■ 비대면 분야 벤처·스타트업 육성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산업의 혁신 걸림돌 규제의 선제적 정비 시급

-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분야의 벤처투자는 전년동기대비 21.7% 증가하였으며 중기부는 비대면 분야 벤처·창업기업을 집중 육성 계획

* 1분기 비대면 분야 벤처투자 증가율(전년동기대비, %): 물류·유통(226.0), 스마트 헬스케어(187.3), 스마트비즈니스·금융(157.7) (중기부, 2020)

- 그러나 혁신 벤처·스타트업 육성정책에 발맞춰 시의적절한 규제혁신이 추진되지 못할 경우 혁신생태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한계가 우려

* 혁신산업 분야 기업 애로사항(중복응답): 정부규제(74.6%), 판로부족(74.0%), 자금조달(71.9%), 우수인력 확보(71.3%) (대한상의, 2017)

- 특히,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해외자본 유치가 필수이므로 글로벌 시장에서 ‘규제혁신 국가’로 포지셔닝 필요

■ 한편, 제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책자금 등 유동성 지원과 함께 비용유발 규제 완화를 통한 생산비용 절감을 도모할 시점

- 중소기업은 생산 단위당 규제비용이 높아 매출액이 하락하는 경제위기시 대기업에 비해 경영부담이 더 가중

* 2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종사자 1인 당 규제비용은 500인 이상 대기업에 비해 36%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(Crane, 201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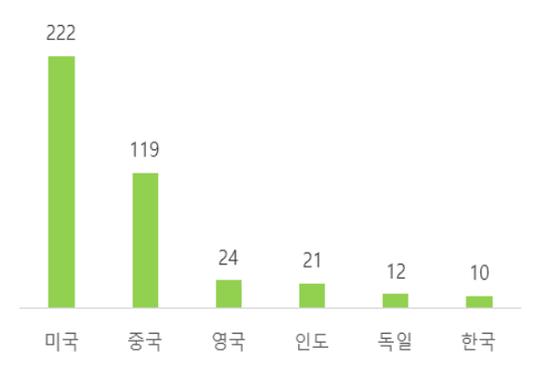
- 특히, 인건비, 원재료비 등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리쇼어링(reshoring) 촉진을 위해서는 이를 상쇄할 획기적인 규제혁신 필요

* 유턴기업(개): ('14) 20 → ('16) 12 → ('18) 9 → ('19) 16 (산업부, 2020)

■ 혁신산업은 비대면 진료 등 핵심분야, 제조업은 국제수준에 비해 과도한 환경·노동 분야 규제의 개선이 시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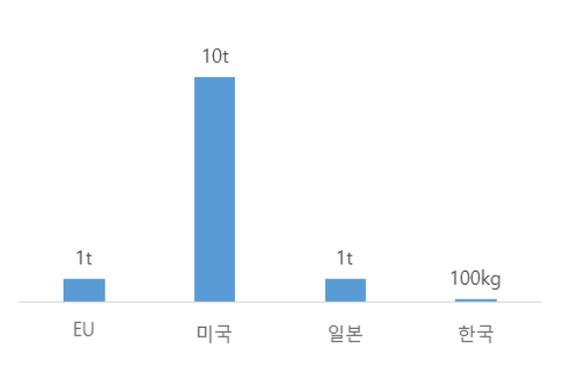
- 혁신산업 분야의 규제환경은 스타트업의 시장진입에 경직적이며 비대면 진료 등 핵심규제에 대한 개선 논의는 오랜 기간 답보상태
 - 미국, 중국 등 주요국은 유연한 규제환경 속에서 온라인플랫폼, 핀테크, AI, 헬스케어 등 다양한 혁신산업을 중심으로 세계시장을 선점 중
 - 그러나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은 대부분은 진입장벽 등의 규제가 없는 전자 상거래 분야에 집중되는 ‘쏟림 현상’을 보임
 - *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 분야별 현황: 전자상거래 6개, 핀테크·헬스케어·여행·게임 각 1개
- 한편, 우리나라는 연간 0.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도 화평법에 따라 등록할 의무를 가지며 이는 미국(10톤), EU·일본(1톤) 등 해외에 비해 과도
 - 특히,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주요 환경·노동 분야 규제는 코로나19 영향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이중고로 작용할 우려
 - * ('20.1) 화관법 취급시설 의무 적용, 강화된 산안법 본격 시행 → ('20.12) 300인 미만 52시간제 제도기간 종료 → ('21.12) 기존 화학물질 등록 의무

〈그림 1〉 국가별 유니콘기업수(개)



자료 : CB Insights(2020.4월 기준)

〈그림 2〉 등록대상 신규화학물질 중량



자료 : EU REACH, 미국 TSCA, 일본 화심법, 한국 화평법

2. 20대 국회의 규제혁신 성과와 한계

- (성과) 20대 국회('17~'20년)는 신기술·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다수의 법률을 가결하며 지난 4년간 의미 있는 규제혁신 노력을 전개
 - 그 결과 신산업·신기술 도입에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, 데이터 3법,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(이하 P2P법) 등이 도입되고,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등이 이뤄짐
 - (규제 샌드박스) 신기술·신산업 분야의 혁신성장을 위해 지난 '18.11월 국회를 통과하여,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영국, 호주* 등에 비해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
 - '20.3월 기준 규제 샌드박스 승인건수는 총 218건**으로 비대면 의료 등 그 동안 풀지 못했던 해묵은 규제를 해결하며, 혁신 활동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
 - * 영국(연 40건 승인, '19.4월 기준), 호주('16년 도입 후 총 6건 승인, '19.4월 기준), 일본('18년 도입 후 총 9건 승인, '19.10월 기준)
 - ** 혁신금융 93건, 산업융합 39건, ICT융합 47건, 지역특구 39건
 - (데이터 3법) '20.1월 데이터 3법(개인정보보호법, 신용정보법, 정보통신망법)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
 - 인공지능, 사물인터넷, 빅데이터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에서의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이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함에 따라 신산업·신서비스 산업 활성화 기대
 - (P2P법, 공인인증서 등) 금융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P2P금융(개인간 거래) 관련 법률이 별도로 제정되어 대부업이 건전한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
 - 지난 5.2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어 다양한 인증수단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
 - 이 밖에 수소충전소 설치 요건 완화, 자율주행 자동차 및 드론 관련 규정 개선, 스마트공장 ICT융합 제품 인증기준 개선, 3D 프린트 활용 확대 등 신산업·신기술의 혁신성장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

- (한계) 신산업·신기술 분야의 규제혁신이 활발히 이뤄진 반면, 일부 핵심규제 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되어 폐기됨
 - 신산업과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, 정부 입법예고 법률 가운데 국회의 문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된 법률은 전체의 29.6%를 차지
 - 정부제출 법률안은 의원발의 입법안에 비해 준비단계*에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실시하는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
 - * 정부입법 절차 : 법률안 입안 → 관계부처 협의 → 당정협의 → 입법예고 → 규제심사 → 법제처 심사 → 차관회의·국무회의 → 대통령 서명 → 국회제출
 - 국회의 임기만료로 핵심규제가 폐기됨에 따라, 정부제출 법률안 재발의 및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규제 정체 현상 심화 가능

〈표 1〉 20대 국회의 신산업·중소기업 관련 규제혁신 진행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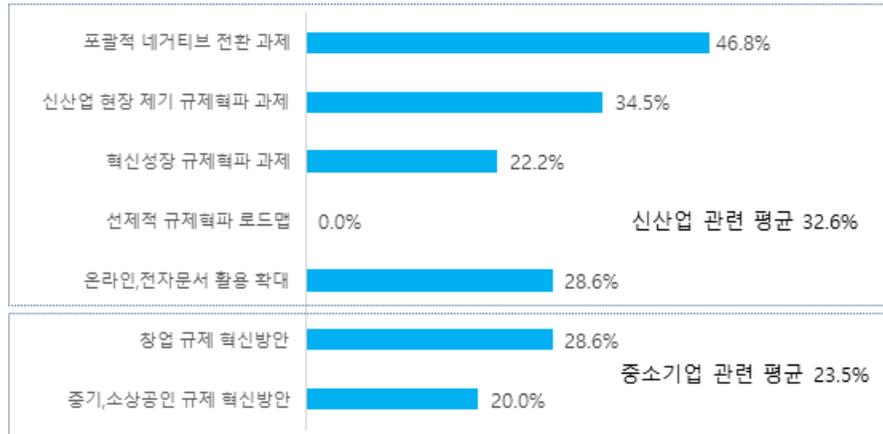
(단위 : 개)

분야	완료	부분완료	진행중	폐기
합계	662	7	190	61(29.6%)
법률	78	1	66	61(29.6%)
시행령	140	-	36	-
시행규칙	112	2	33	-
행정규칙	209	4	27	-
기타	123	-	28	-

자료 : 규제정보포털 규제혁신과제, 2020.5.22. 기준

- 특히, 신산업 관련 규제 법안들은 평균 32.6%가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었으며, 중소기업 관련 법안들은 평균 23.5%가 폐기됨
 - 신산업·신기술 도입을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‘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’, ‘신산업 현장 제기 규제’ 법률 폐기가 각각 46.8%(29건), 34.5%(10건)로 가장 높음
 - 중소기업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‘창업규제’와 ‘중기·소상공인 규제’는 각각 28.6%(8건), 20.0%(8건)가 국회의 문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

〈그림 3〉 정부제출 법률안 가운데 폐기된 주요 규제 분야



자료 : 규제정보포털 규제혁신과제, 2020.5.22. 기준

- 데이터 3법(14개월), P2P법(28개월) 등 핵심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었으며, 일부 중요 규제들은 아직도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거나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될 예정
- 비대면 의료, 안경,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,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범위 확대 등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법률들이나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됨

〈표 2〉 정부제출 법률안 가운데 폐기된 주요 규제 법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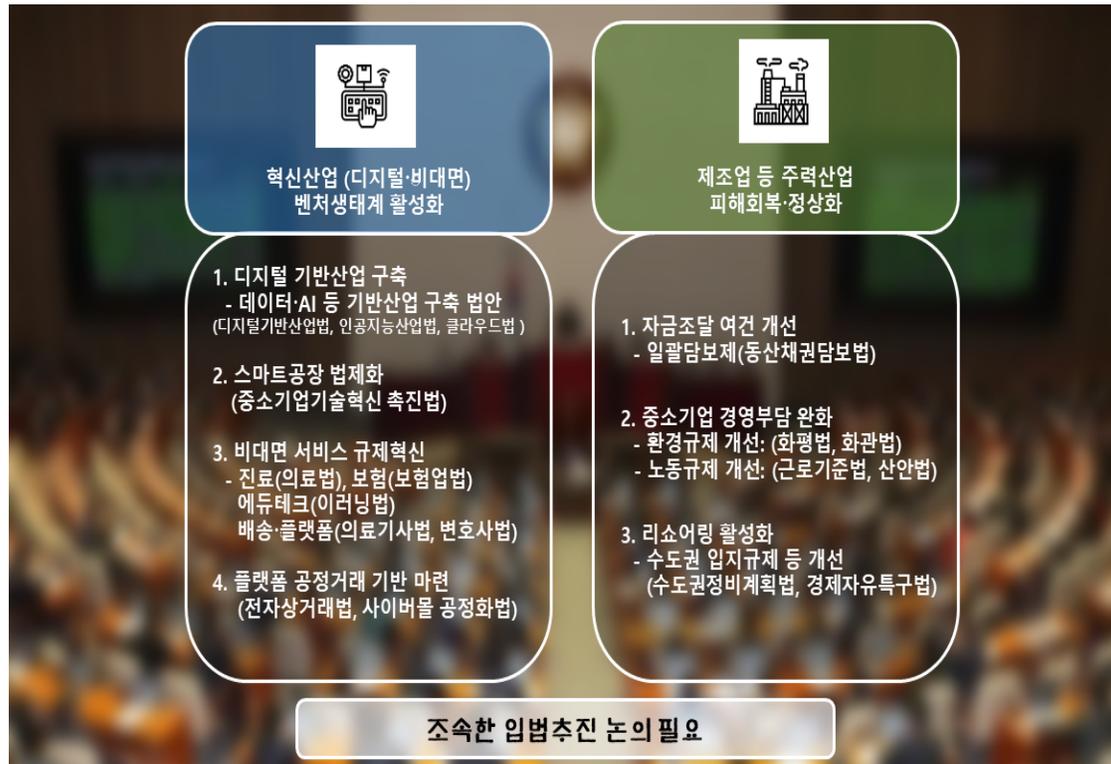
분야	주요 법안	주요 내용
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금융혁신지원특별법 •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금융기관 고객정보 클라우드 활용 허용 •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범위 확대
신산업 현장 제기 규제혁파 과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의료기사법 •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안경, 콘택트 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• 3D 프린팅 의료기기 제조업체 신고, 안전교육 등 중복 규제 개선
혁신성장 규제혁파 과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생명윤리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
온라인, 전자문서 활용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자문서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자문서에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 부여
창업 규제 혁신 방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험업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액보험업 진입장벽 완화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의료법 • 공중위생관리법 • 이력산업발전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비대면 의료 허용 •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금지 완화 • 에듀테크 정의 신설

자료 : 규제정보포털 규제혁신과제, 2020.5.22. 기준

3. 21대 국회 최우선 규제혁신 추진 과제

- 정부 차원의 규제혁신만으로는 포스트코로나 대응에 한계가 있는바, 국회가 규제혁신 법안 마련에 주도적 역할 수행 필요
- 본 보고서는 디지털·비대면 분야 벤처생태계 활성화와 제조업의 코로나 피해회복·정상화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규제혁신 과제를 제시
 - 디지털·비대면 분야 규제혁신 방향 : ▲디지털 기반산업 구축, ▲스마트공장 법제화, ▲비대면 서비스 규제혁신, ▲플랫폼 공정거래 기반 마련
 - 제조업 규제혁신 방향 : ▲자금조달 여건개선, ▲경영부담 완화, ▲리쇼어링 촉진

〈그림 4〉 21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규제혁신 과제



주 : 괄호 안은 20대 국회에서 추진되었던 법안 명
 자료 : 중소기업연구원 작성

1) 비대면·디지털 분야 벤처·창업 활성화

■ (디지털기반산업) 데이터,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산업 구축을 위한 법안 마련 재추진 필요

- ‘데이터 3법’ 통과로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·제도, 지원체계, 인프라는 아직 미흡한 상황
 -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산업 정책 추진 및 거버넌스 정립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법률상 근거가 미흡 (신용우, 2019)
- 20대 국회에서는 디지털기반 산업, 인공지능, 클라우드 산업육성을 위한 다수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으나 국회 처리 무산
 - 디지털기반산업 기본법 : ▲디지털기반 산업·기술 정의, ▲중소기업 신기술 개발 및 창업지원, ▲일자리 창출 지원 및 한시적 규제유예 등
 - 인공지능산업 진흥 법률안 : ▲전문인력 양성, ▲표준화 지원, ▲인공지능 거점지구 조성 및 규제특례 등

■ (스마트공장) 포스트 코로나 대비 중소제조업의 비대면 생산·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법제화 재추진 시급

- 20대 국회에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을 통한 스마트공장 관련 법적 근거 신설을 추진한 바 있으나 법제화 되지 못함
 - * 금년 들어 정부는 스마트공장 법제화를 위한 ‘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(가칭)’ 제정을 다시 추진 중 (전자신문, 2020.1.22.)

■ (비대면 서비스)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비대면 진료, 원격 교육, 비대면 배송·플랫폼 등 비대면 산업의 진입·서비스 규제혁신 노력 필요

- (비대면 진료)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되었으나 사회적 합의 도출에 실패
 - 의료기기 제조 중소기업, 플랫폼 스타트업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주요 후방산업으로 원격의료 허용 시 높은 부가가치 창출 기대

- * 원격의료 서비스 규제 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 : 국내총생산 약 2조 4,000억원(0.15%) 증가 (김재현, 2020)
- * (프랑스 사례) 2018년 원격진료 합법화 → 기업가치 10억 달러, 종사자수 1,000명에 달하는 유니콘 기업 'Doctolib' 배출
 -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료 허용 범위(대상 환자, 지역)와 허용 기관(1~3차 병원) 등 합리적 대안 도출을 위한 논의 착수 필요
- (비대면 보험) 자본금 수준이 완화된 소액 단기보험업(50~300억원 → 3억원) 신설을 추진하였으나 임기만료 폐기
 - 펫보험, 공연티켓보험, 날씨보험 등 다양한 맞춤형 보험업 시장에서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규제혁신 필요
 - * (일본사례) 자본금 1000만 엔(약 1억원)의 소액단기보험업 신설(2005) → 연평균 10% 성장(보험사 창업 97개) (국무조정실, 2018)
- (에듀테크) 에듀테크 산업 정의 신설, 스타트업·벤처기업 지원 등을 포함한 이러닝산업법 개정이 추진되었으나 20대 국회에서 폐기
 - 에듀테크 스타트업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안 마련 재추진 필요
 - * 에듀테크 유니콘 기업(20.4월 기준) : (중국) 8개, (미국) 3개, (인도) 1개 : 누적투자액 합계 225억달러 (CB Insights)
- (비대면 배송·플랫폼) 온라인 안경배송, 리걸테크 등 비대면 배송·플랫폼 규제혁신이 추진되었으나 이해관계자간 갈등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함
 - 정부는 신산업 관련 갈등조정을 위한 '한걸음 모델'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쟁점규제의 대부분이 국회심의회가 필요한 법률인 만큼 국회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
- (플랫폼 공정거래) 배달앱 등 플랫폼 불공정거래 규제 법안 재추진 필요
 - 20대 국회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, 사이버몰 공평화법안 등 플랫폼 불공정거래 해소를 위한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
 -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: 중개수수료 책정시 준수사항 규제, 소상공인에 대한 법정 우대수수료를 적용 등
 - 사이버몰 공평화법안 : ▲부당한 거래 거절 등 금지, ▲광고비와 부가서비스 비용 과다 청구 금지 등

-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,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플랫폼 규제법안 마련 필요
 - 유럽연합(EU)은 플랫폼 협력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‘온라인 플랫폼 규칙’ 도입(20.7),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규정한 디지털서비스법안 마련(20.4.)

〈표 4〉 비대면·디지털 분야 벤처·창업 활성화를 위해 재논의 되어야 할 규제혁신법안

	분야	20대 국회 추진 법안명 (대표발의 의원)	주요내용
디지털 기반 산업	데이터 · AI	클라우드컴퓨팅법 (송희경·함진규·정병국 의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클라우드컴퓨팅기술에 관한 표준 마련 • ‘보안인증’의 법적 근거 및 중소기업 지원 근거 신설
		디지털기반산업 기본법 (정세균 의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디지털 기반기술 정의 • 규제개선 및 일자리 창출 시책 마련
		인공지능산업 진흥 법률안 (김경진, 이상민 의원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문인력 양성, 표준화 지원 등 • 인공지능 거점지구 조성 및 규제특례
스마트 제조업	스마트공장	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(김철민 의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스마트공장 관련 법적 근거 신설
비대면 서비스	비대면진료	의료법 (정부, 유기준 의원 등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
	비대면보험	보험업법 (유동수 의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액 미니보험업 신설 (자본금 50~300억원 → 3억원)
	에듀테크 (원격교육)	이러닝산업법 (김진표 의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에듀테크 산업 정의 신설 • 스타트업·벤처기업 지원 • 우수 에듀테크 제품 공공구매 근거
	비대면배송 플랫폼경제	의료기사법 (정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도수 물안경과 저도수 돋보기안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
		변호사법 (입법 추진 중 중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비대면 법률서비스(리걸테크) 허용
		공유경제기본법안 (김수민 의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시적공급자(거래금액, 거래빈도 일정규모 미만)에 대한 규제 완화
플랫폼 공정경쟁	전자상거래법 (김재경 의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개수수료 책정시 준수사항 규제 • 소상공인에 대한 법정 우대수수료율 적용 	
	사이버물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(송기헌 의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오픈마켓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	

자료 :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재가공

2) 제조업 등 주력산업의 피해회복·정상화

■ (금융) ‘일괄담보제’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동산·채권 담보법의 신속한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·자영업자에 원활한 자금조달 환경 조성

- 일괄담보제도 도입, 담보권 존속기간 폐지 등을 포함한 동산·채권 담보법 개정이 20대 국회에서 추진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

- 일괄담보제도 : 담보자산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기계 및 설비, 지식재산권, 매출채권 등을 하나로 묶어 담보로 잡는 대출 방식

- 담보권 존속기한 : 장기자금 지원을 위해 담보권존속기간(5년) 폐지

- 코로나발 유동성 위기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산금융 활성화 법안 마련을 통해 중소기업 여신 관행의 획기적 개편 필요

- * 중소기업의 동산 자산은 600조 원에 달하나 중소기업 담보대출 중 부동산 비중이 93.9%를 차지 (금융위, 2018)

■ (환경·노동) 중소기업의 기초체력 회복을 위해 경영부담을 야기하는 과도한 환경·노동 규제의 획기적 혁파 추진

- 환경·노동규제는 시설·인건비 등 고정비용(fixed cost)이 대부분으로 경기침체기에도 생산비용을 줄이기 어려워 중소기업에 경영부담을 야기

- * 화학물질 1종당 등록비용 : 정부추산 평균 1,200만원, 산업계 추산 최소 8천만원 (환경부, 2019)

- * 업체당 평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투자비용 : 3,200만원 (중기중앙회, 2019)

- *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중소기업 총 인건비 부담액 : 1조 8,000억원~2조 9,000억원 (노민선, 2018)

- 20대 국회에서는 중소기업계의 건의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경·노동규제 혁신법안이 다수 발의되었으나, 대부분 국회 처리 무산

- 환경 : ▲화학물질 등록대상 톤수 완화, ▲연구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, ▲화관법·산안법 중복 절차 개선, ▲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기간 단축

- 노동 : ▲중소기업의 52시간 근로제 적용시점 유예, ▲공정안전보고서 심사기간 단축, ▲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비공개심사 면제 등

- (입지) 리쇼어링(reshoring) 활성화를 위해 국내 공장 신·증설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공장 입지규제 개선
 -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공장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기업 리쇼어링(유턴) 대책 마련을 추진 중
 - 유턴 기업에 대한 자금과 보조금, 세제지원 확대 등이 논의 중
 - 그러나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위해서는 자금·세제 지원 + 수도권 입지 규제완화가 패키지로 제공될 필요
 - 국내 복귀 의향이 있는 해외진출 기업 중 서울·수도권으로 복귀하겠다는 기업이 53.3%를 차지 (매일경제, 2020.5.11)
 - 이를 위해서는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‘수도권 내 공장 설립 규제의 완화’ 법안들을 리쇼어링 활성화 관점에서 전향적으로 재검토 필요
 - 규제의 전면 폐지가 ‘지역균형 발전’이라는 가치와 상충된다면 유턴기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 등 검토

〈표 3〉 제조업 등 주력산업의 피해회복·정상화를 위해 재논의 되어야 할 규제혁신법안

분야	20대 국회 추진 법안명 (대표발의 의원)	주요내용
금융	동산·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(정부)	• 일괄담보제도 도입, 담보존속기한 폐지
환경	화학물질등록평가법 (정병국·정태욱·신용현 의원 등)	• 등록대상 톤수 완화(0.1t→1t) • 연구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• 유해성 심사기준 공개 및 기업의견 수렴
	화학물질관리법 (한정애 의원 등)	•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규제 완화 •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기간 단축
노동	근로기준법 (이원욱 의원 등)	• 중소기업 52시간 근로제 적용시점 유예
	산업안전보건법 (정병국 의원 등)	•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기간 단축(30일 이내) •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비공개심사 면제
입지	수도권정비계획법 (송석준·김성원·정성호 의원 등)	• 수도권 내 공장 설립 규제 완화
	경제자유구역법 (이학재 의원 등)	•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 승인 주체 변경(산업부 → 지자체)

자료 :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재가공

4. 결론

- 비대면 분야 혁신산업 육성·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공적 안착, 제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혁신 걸림돌 규제의 선제적 정비가 핵심
 - 비대면 산업 등 신산업 활성화(성장 잠재력 확충)와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조기 정상화(위기극복)라는 당면과제에 직면함
 - 비대면 진료 등 장기간 담보상태인 혁신산업분야의 규제혁신,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환경·노동규제 합리화가 시급
-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규제혁신 입법과제의 신속한 추진 필요
 - 데이터,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산업 구축을 위한 법안 마련 재추진 필요
 - 포스트 코로나 대비 중소제조업의 비대면 생산·효율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공장 법제화 재추진 시급
 -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비대면 진료, 원격 교육, 비대면 배송·플랫폼 등 비대면 산업의 진입·서비스 규제혁신 노력 필요
- 제조업 등 주력산업 피해회복·정상화를 위해 다음 규제혁신 입법과제의 신속한 추진 필요
 - ‘일괄담보제’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동산·채권 담보법의 신속한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·자영업자에 원활한 자금조달 환경 조성
 - 중소제조업의 기초체력 회복을 위해 경영부담을 야기하는 과도한 환경·노동 규제의 획기적 혁파 추진
 - 리쇼어링(reshoring) 활성화를 위해 국내 공장 신·증설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공장 입지규제 개선
- 21대 국회의 최우선 규제혁신 과제의 조속한 재입법 및 처리를 위해 국회 차원의 ‘(가칭)규제혁신특별위원회’ 구성 필요
 - 17대, 18대 국회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‘규제개혁특별위원회’ 운영하였음

- 특히 18대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1년 한시적이었지만, 17대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와 달리 입법권이 부여되었음
- 영국은 의회 차원의 규제개혁위원회(Regulatory Reform Committee)를 운영
 - 입법개혁명령(Legislative Reform Orders, LRO) 입안 등 관련 사항, 기존규제 개혁 수행
 - 영국 하원에도 동일한 역할을 하는 국회차원의 규제개혁기구(Delegated Powers and Regulatory Reform Committee)가 있음
- 21대 국회에서는 ‘(가칭)규제혁신특별위원회’를 운영하여 신속한 규제 혁신 추진 필요
- 또한, 포스트코로나 대비 국회의 규제혁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회 통과된 입법의 신속한 하위법령 마련 필요
 - 데이터 3법 등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행정입법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함
 - 정부의 행정입법 마련시 상위법의 규제혁신 취지를 왜곡시켜 기업을 옥죄는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할 필요

참고자료

- 김재현(2020), 「원격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의 경제적 파급효과」, 파이터치연구원
- 금융위원회(2018), 『혁신성장 금융생태계 조성 추진현황』.
- 국무조정실(2018), 『창업규제 혁신방안』.
- 노민선(2018), 「근로시간 단축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과제」, 중소기업연구원
- 대한상공회의소(2017), 『국내 신산업 규제애로 실태조사』.
- 매일경제, “고질적 수도권규제…리쇼어링 막힌다.”. 2020. 5. 11. 접속,
<https://www.mk.co.kr/news/economy/view/2020/05/480802/>
- 산업통상자원부(2020), 『개정 유턴법, 3.11일 부터 시행』.
- 신용우(2019), 「인공지능 관련 입법 현황 및 전망」, 국회입법조사처
- 중소기업중앙회(2019), 『화학물질관리법』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』.
- 중소벤처기업부(2020), 『중기부, 코로나19 이후 대비 ‘비대면경제과’ 설치』.
- 한국경영자총연합회(2020), 『최근 현안에 대한 경제전문가 의견 조사결과』.
- 환경부(2019), 『화평법과 화관법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법률로 취지·원칙은 지키면서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·검토하겠음』.
- Nicole V. Crain and W. Mark Crain(2010), “The Impact of Regulatory Costs on Small Firms,” SBA Office of Advocacy

KOSBI 중소기업 포커스

발행인 : 이병헌

편집인 : 전인우

발행처 : 중소기업연구원

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가길 77 (신대방동 686-70) (07074)

전화: 02-707-9800, 팩스: 02-707-9894

홈페이지: <http://www.kosbi.re.kr>

인쇄처 : 사단법인 나눔복지연합회

-
-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(연구진)의 견해이며, 중소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 - 본지의 내용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,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